#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38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한규·진선미·장철민

민병덕 · 강훈식 · 김태년

유준병 • 백혜런 • 박정현

임미애 · 박희승 · 이용우

이재정 • 박홍근 • 양부남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배우자 를 제외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자 함(안 제51조 등).

####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시설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훈병원"을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하다. 같은 조 제7항 중 "따른"을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한다.

제51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를 "진료비용의부담에 관하여는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1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제51조(진료) ①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	
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	
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의 <u>의료시설</u> [「한	의료기관
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	
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u>의료시설</u>	<u>의료기관에서</u>
<u>에서</u>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	②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
<u>의료시설</u> 에 위탁할 수 있다.	<u>기관</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③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u>의료시설</u> 에서	의료기관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	
다.	

-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 免)하며, 그 감면된 <u>비용은 국</u>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b>4</b>
의료기관 및
<u>의</u>
료기관에서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u>비용의 부담</u>
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
<u>다</u> .
6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 1. • 2.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u>따른</u> 진료 또는 진료비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1. • 2. (현행과 같음)
⑦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료기관의 범위,
·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
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
<u>기관</u>
<u>진료비용</u>

##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저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하며,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51소제3
<u>항을 준용한다</u> .
세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u>제51조제1항에 따른</u>
의료기관에서의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
관 외